

의안번호	제 474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3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소비세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직접 처리한다.

제2장에 제4절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지방소비세

제52조의2(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도지사는 매월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7조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충청북도 조례 제3171호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분 지방소비세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략)</p> <p>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신설> <p>제10조(부과·징수의 위임) ①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단서 신설></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지방소비세</p> <p>제52조의2 <신설></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지방소비세 <p>제10조(부과·징수의 위임) ①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u>다만,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직접 처리한다.</u></p> <p>②(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지방소비세</p> <p>제52조의2(지방소비세 납입확인)</p> <p>① <u>도지사는 매월 법 제159조의7 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②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u></p>

제77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0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7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0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제79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시장(군수)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충청북도 조례 제3171호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5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제79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시장(군수)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충청북도 조례 제3171호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5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10.1.1>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5. 주민세
- 5의2. 지방소득세
- 5의3. 지방소비세

제159조의7(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59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40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하의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7	삭제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59조(과세표준과 세율)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